(5)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

□ 사업개요

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제고

□ 지원대상
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 - * 제외대상 : ①유흥·향락업,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·폐업 중인 중소기업 ②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(다만,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·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) ③ 2회 이상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
 - (자격요건)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

< 컨소시엄 지원 자격조건 >

구분		자격조건		
컨소 시엄	도입기업	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<u>중소기업</u> * 해외연계과제의 경우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		
	공급기업	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- 보안솔루션(네트워크, 서버, PC보안 및 문서보안 등)을 보유하고, 해당분야의 개발실적과 물리적・기술적 보안솔루션 공급능력을 보유한 기업		

□ 지원규모 : 10개사 내외(예산 소진 시까지)

- (일반과제) 내부정보 유출방지시스템(DLP, 이동식저장장치 통제), PC 및 문서보안 솔루션(DRM, 워터마크), 물리적 보안 솔루션 도입 등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지원
 - * 출입통제 및 지문인식 등 단순 물리적 보안은 기업 자체 부담
- (해외과제) 본사(국내)와 지사(해외) 간 보안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
 - * 해외 지사의 시스템구축 비용은 도입기업에서 부담
- (고도화과제) 기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이 보안시스템의 기능개선, 고도화를 위해 추가로 신청

< 과제유형별 세부내용 >

구 분	정부지원 한도	지원자격	지원비율	사업기간
일반	최대 32백만원(40%)	중소기업	총 사업비의 80% (자부담 20%)	최대 4개월
해외연계	기대 32 국단편(40%)			
고도화	최대 16백만원(40%)	기 지원이력 기업		

^{*}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은 20% 자기 부담/일반형 구축사업은 50% 자기 부담

□ 신청방법

- (신청기간) 별도 공고 예정(3월, 6월)
- (신청방법)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(www.ultari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

□ 지원절차



※ 접수현황 및 운영현황에 따라 추진 일정은 변동

^{**} 운영현황에 따라, 지원금 최대한도 등은 변동가능성 있음